



안성시자원봉사센터

- 자원봉사활성화 및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복지향상을 위한 -

협약서

안성시시설관리공단, 안성시보건소,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성화 및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, 안성시보건소, 안성시자원봉사센터간의 연계, 상호협력을 통해 자원봉사활성화 및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범위)

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추진한다.

- 안성시시설관리공단
 -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재능제공
- 안성시보건소
 -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발굴 및 연계
- 안성시자원봉사센터
 - 자원봉사활동 대상자 파악 및 봉사활동 전반적인 제반사항 지원

제3조(협약기간)

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

본 협약과 관련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, 안성시보건소,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상호 업무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동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에 위해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
제5조(합의정신)

각 기관은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제6조(기 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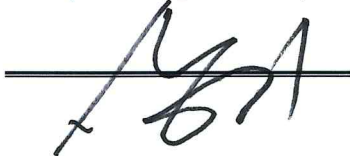
1.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해 처리한다.
2. 본 협약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, 각 기관의 대표가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날인하며,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1월 12일

안성시시설관리공단

이 사 장

박 상 기



안성시 보건소

소 장

태 춘 석



안성시자원봉사센터

소 장

신 수 철

